

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

제정

2019. 1.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충청남도 종합체육대회 규정 제38조에 따라 종합체육대회의 경기를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회운영

제2조(예선대회) 시군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에 참가 시군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예선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조(참가신청) 시군별 예선대회에서 대표로 선발된 개인 및 단체는 대회 참가요강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장이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경기종목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선대회를 거치지 아니한 자를 참가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체육회장이 결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4조(대회참가) ① 종합체육대회는 시군에서 신청한 개인 및 단체가 참가하며 대회참가요강의 적용을 받는다.

② 충청남도체육대회에 참가신청 후 토너먼트 세부종목 중 4개 시군 미만이 참가를, 기록경기 세부종목 중 5명 미만이 참가를 하였을 경우 그 해당되는 종합점수 채점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충청남도체육대회에 참가신청 후 토너먼트 세부종목 중 4개 시군 이상이 참가를, 기록경기 세부종목 중 5명 이상이 참가신청을 한 후 일부 선수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불출전 하였을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하며, 그 불출전한 단체(선수)는 충청남도 종합체육대회 규정 제29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5조(참가요강) ① 종합체육대회의 일반사항, 시상, 참가자격, 경기종목별 참가는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종합체육대회의 참가요강은 종합체육대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대회방법) 종합체육대회의 경기는 시군 대항으로 한다.

제7조(경기방법 및 경기규칙) 종합체육대회의 경기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규칙에 따르되, 제3장 경기방법과 같이 운영한다.

제8조(경기진행) ① 종합체육대회의 모든 경기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책임 하에 이를 진행한다.

② 대회본부는 대회기간 중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경기운영을 잘못하여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되거나 경기 참가자들이 경기장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여 더 이상 경기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회본부의 결의로 해당 경기의 모든 경기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경기의 모든 경기 일정이 취소된 종목은 당해 연도 종합체육대회에서 실시하지 않은 종목으로 간주하며, 충청남도체육대회의 종합체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목의 경우(대회 중 심판부정, 선수폭력, 학부모의 경기장 점거 등) 3년간 확정배점 50%를 적용하고 2회 이상 발생이 될 경우에는 종합체육대회 경기종목에서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합체육대회 경기종목에서 제외된 종목은 3년이 경과하여야 경기종목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

제9조(경기일정) ① 종합체육대회 경기일정은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작성하며 체육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전국체전의 출전 등 선수 대다수가 참여하여 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경기진행이 어려운 종목은 대회 기간 전에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경기심판) ① 경기심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규정에 의하되 그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지정한 심판원이 담당한다.

② 심판의 판정에 대한 소청은 당해 경기종목의 심판부장이 이를 처리한다.

③ 해당 경기종목 심판부장의 결정에 대한 상소가 있거나 기타 결정되지 않은 심판판정에 대한 사항은 대회본부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11조(무자격선수 출장) ① 단체경기 또는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에 있어서, 대회 개막 이후 무자격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당해 단체는 몰수 처리한다. 출장이라 함은 경기시작 전 해당경기 단체의 규정에 따라 선수명단을 제출하는 시점을 말한다.

- ② 참가 신청하여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③ 무자격 선수 출장이 확인되어 몰수 처리되었을 경우, 소속 시군은 당해 종목에 대하여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당해 종목이라 함은 단체경기,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은 당해 종별을, 개인경기종목은 당해 세부종목 및 체급을 말한다.

제12조(지위변동) 무자격 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무자격선수 또는 그 소속단체는 즉시 몰수 처리하고 그 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모든 지위는 무효로 하되, 실격 선수 또는 단체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아니한다.

제3장 경기방법

제13조(경기방법) 종합체육대회의 경기는 채점종목과 비채점종목으로 나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채점종목: 검도, 게이트볼, 궁도,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수영, 씨름, 야구, 역도, 유도, 육상,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2. 비채점종목: 그라운드골프, 농구, 댄스스포츠, 산악, 승마, 자전거, 체조,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합기도
3. 기록경기
 - 가. 개인 기록경기: 역도, 육상, 수영
 - 나. 단체 및 개인 기록경기: 궁도, 자전거
 - 다. 개인 점수경기: 보디빌딩, 승마
 - 라. 단체 및 개인 점수경기: 댄스스포츠, 볼링, 산악, 체조
4. 토너먼트경기
 - 가. 단체 경기: 게이트볼, 농구, 배구, 야구, 족구, 축구
 - 나. 개인경기 단체전: 검도,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 다. 개인경기(체급경기 등): 복싱, 유도, 씨름, 태권도, 합기도

제14조(대진추첨) ① 토너먼트경기의 대진추첨은 시드를 배정한 후 시군 대표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② 대진추첨은 각 시군 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가 결정하며, 각 회원종목단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다.

제15조(단체경기 시드배정)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경기 포함)는 시드제를 적용하며, 시드는 개최지팀에 배정하되, 별표 1의 '1'의 위치에 배정한다.

제16조(개인경기 시드배정)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되는 개인경기는 대회 개최지 선수에만 시드를 배정하며 시드는 별표 1의 '1'에 배정한다.

제17조(경기진행 순서) 토너먼트는 별표 1의 경기진행 순서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승패결정) 토너먼트경기에 있어서 동위자 순위전(3, 4위전, 5, 6, 7, 8위전 등)을 하지 아니하며 무승부일 경우 참가요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회원종목단체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제 4 장 경시기록 관리

제19조(경시기록 보고) 종합체육대회의 모든 경시기록은 체육회가 제정한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경기부장과 기록 책임자가 확인·서명을 한 후 대회기록시스템에 신속·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경기영상 촬영 및 외부공개) 종합체육대회의 종목별 경기장 내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

제 5 장 심판 및 소청

제20조(심판운영 및 배정) 종합체육대회의 경기심판은 해당 회원종목단체 별 심판위원회규정에 의하되 그 해당 회원종목단체 별로 지정한 심판원이 담당한다.

제21조(소청처리) ① 충청남도종합체육대회규정 내 경기운영내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심판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회소청심의위원회가 처리한다.

② 시군체육회는 소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소청심의위원회는 시군체육회 임원 3명과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부장만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22조(소청판결) 대회본부 소청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결정에 대한 이의는 제출할 수 없다.

제 6 장 경기장 배정 및 운영

제23조(경기장 배정 및 사용승인) ① 종합체육대회의 종목별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개최 시군 내 체육시설을 최대한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개최 시군 이외 타 시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군 체육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최지는 경기장 배정안과 함께 경기장의 조명, 안전망, 차광막, 관중수용 능력, 바닥재의 상태, 득점판 등의 경기진행시설 및 경기진행에 필요한 각종 통신시설, 비품 등을 명시한 각 경기장별 도면을 당해 대회개최 5개월 전까지 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사용 확인과 체육회의 공·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제규정상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해당종목: 육상, 수영(경영)>

④ 개최지는 제1항에 따라 경기종목별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참가하는 종목의 인원을 감안하여 적정한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24조(경기장 규격) 개최지는 해당 경기종목의 회원종목단체 경기규칙에 의한 정 규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관람객 수용인원의 사전 검토 및 적정 배정으로 경기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 및 경기용기구 등) 개최지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관계규정에 의한 경기 시설 및 경기용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경기장 출입신분증) 개최지는 경기장 질서를 위하여 대회임원, 경기임원, 참가선수단, 기자단, 대회준비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신분증을 발급해야한다.

제27조(안전사고 예방 의무) ① 개최지는 경기운영내규 제23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경기장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의료진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개최지는 공·승인이 완료된 경기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2019. 1. 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의결 받을 날로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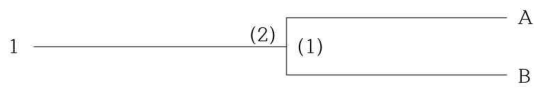
[별표 1]

토너먼트 경기순서 및 시드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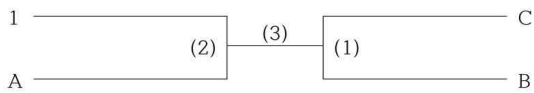
범례 : ()안의 숫자는 경기진행 순서

1은 시드번호 A, B, C...는 추첨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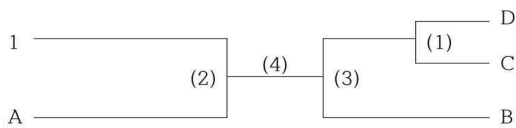
3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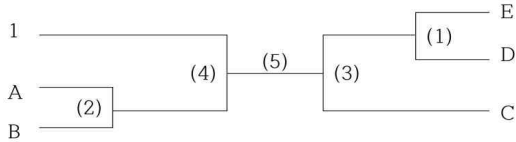
4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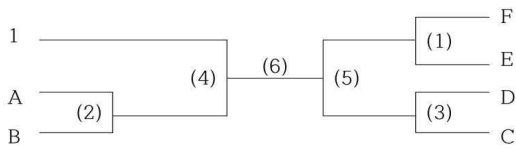
5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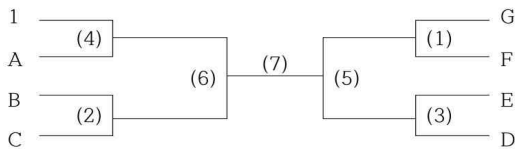
6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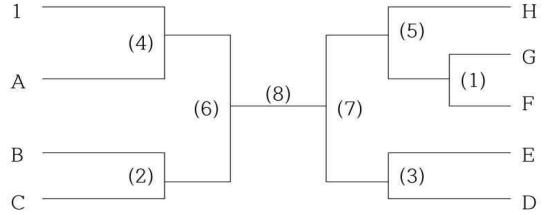
7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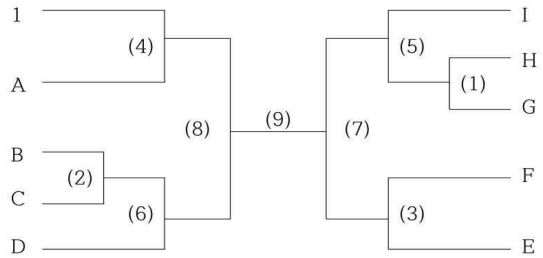
8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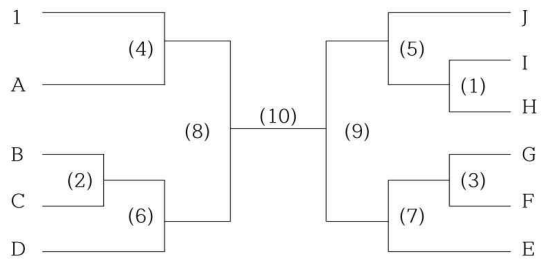
9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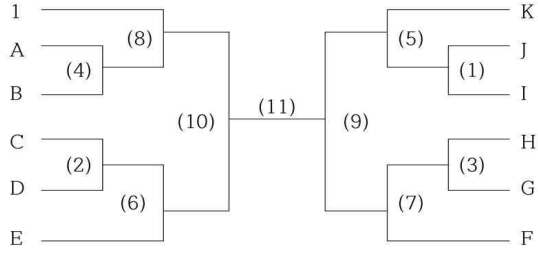
10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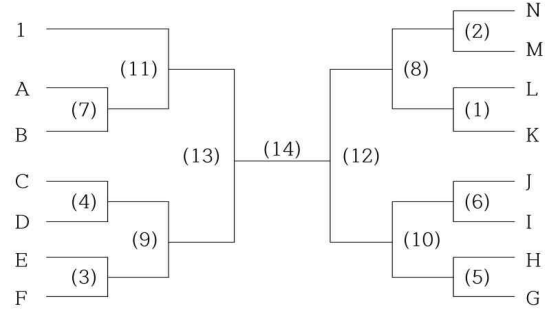
11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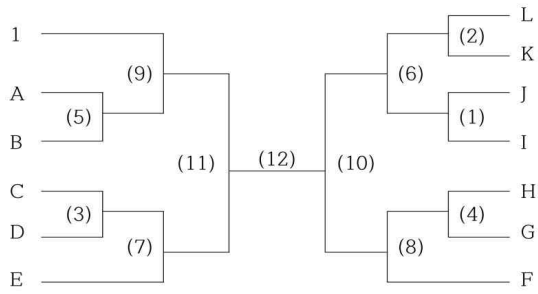
12개팀 참가



15개팀 참가



13개팀 참가



14개팀 참가

